1. 현장에로 기술개발 사업안내
농림수산부는 "현장에로 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802호)에 의거 "95년도 현장에로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96년도에도 동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비 전액을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축정과에서 안내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에서는 95년 2월 6일과 27일 닭의 뉴캣슬병과 돼지의 유행성설사병, 전염성 위장염,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및 돈 콜레라의 발생경보를 알린바 있으며, 95년 3월 7일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및 닭 전염성 F-낭병의 발생경보를 발표하였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4885호 : 95. 1. 5)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개정코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가. 제2조(정의)제1항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적용대상을 "사슴, 토끼, 기타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동물"로 대상동물 규정조항 신설
나. 제2조제1항의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인 "국립종축장, 가축위생연구소 및 축산시험장"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 및 기관명 변경에 따라 "수의과학연구소 와 축산기술연구소"로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변경
다. 법 제44조(과태료)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6조(과태료의 부과)를 아래와 같이 신설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령(농림수산부령 제1995-1167호 : 95. 1. 13)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농림수산부령 제1167호

수의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

수의사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사면허)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합격자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이내(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졸업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의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그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
2.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
3. 기재사항 변경등의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절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교부신청개시일 2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1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증의 반납)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처분을 날부터 10일이내에 면허증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 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8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 제3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진료행위"라 함은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축농가의 무상진료 행위를 말한다.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이름·모색·특징 및 연령(불명시에는 추정연령) 등
2. 병 명
3. 발병연월일(임신진단의 경우에는 임신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7.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8.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②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사진단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증명서등의 교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교부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2. 사산증명서 : 별지 제7호 서식
3. 예방접종증명서 : 별지 제8호 서식
4. 검안서 : 별지 제9호 서식
제11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2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조제하여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약의 용법·용량·교부연월일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3.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4.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이름·모색·특징 및 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등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이름·모색·특징 및 연령(불명시는 추정연령) 등
나. 검안연월일